

# 학부모 의견 사전 수렴 안건

## ● 안건명

1. 2023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심의(안)
2.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은 계 중 학 교 장

# 2023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심의(안)

안건 번호	1
----------	---

제안년월일 : 2023.9.6.  
제안자 : 은계중학교장  
제안설명자 : 창의교육부장

## 1. 제안이유

가. 2023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심의(자문) 받고자 함.

## 2. 근거

- 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나.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방과후교육과-3025(2022.12.12.))

## 3. 주요내용

- 가.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 예정횟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강사 선발 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다. 교재와 재료·교구 선정 기준
- 라. 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
- 마.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 바. 학생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4. 세부내용 : 불임 참조

불임 2023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안) 1부. 끝.

2023학년도 2학기

**창의교육부 운영계획서**  
**(방과후학교 2학기 운영계획서)**



**은 계 중 학 교**

# 2023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가.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에서 흡수·대체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한다.

- 1)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취미와 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
- 2)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 3)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
- 4)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5)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화

## 나. 방침

- 1)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 5) 학생의 건강권·휴식권·안전 등을 위해 정규 수업 이전(0교시) 또는 늦은 시간(22시 이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 7)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대면, 비대면, 블렌디드 프로그램 등 학교의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 8)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보고한다.

## 다. 전략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자율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 라.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마. 2학기 업무 추진 일정

사업 내용	세부실천내용	시 기	대 상	비 고
기초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수요조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2023. 7월	전교생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8월	학운위	
프로그램 개설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9월	학운위	개강 프로그램, 신설 프로그램 확정
강사선정, 임용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교의 장	9월	강사	강사 신규임용, 재임용
분기별 지도 계획 수립	분기별 지도 계획서 작성	9월	강사	지도강사가 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원 연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관련 교원 연수	9월	교사	학급 담임에게 안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학부모 연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관련 학부모 연수	9월	학부모	가정통신문 배부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활동 희망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9월	전교생	
수강료 징수	수익자 부담	2학기	참가 학생	수납 기간은 1주일간
프로그램별 반 편성	출석부, 지도계획 작성	2학기	강사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편성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의한 수업 실시	2학기	참가학생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기간 및 시간 조정
만족도 조사	학기별 활동 후 설문조사	12월	참가학생, 학부모	방과후학교 활동 참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교육활동 홍보	홍보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 활용	2학기	학생, 학부모	

## 바. 세부 추진계획

### 1. 방과후학교 운영 협의

- 1) 학교운영위원회 내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조직
- 2) 소위원회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수강료 책정 등 각종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 3)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위원 : 교감, 창의교육부장, 학부모 위원 2명

### 2. 운영 시기 및 대상

- 1) 운영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2월
  - 2학기 : 2023년 9월 21일~ 2023년 12월 22일
  -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강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한다.
- 2) 운영시간 : 방과후 7,8교시
  - 3개 학년 등교 시 - 목, 금요일 15:40 ~ 17:10 (90분)
  - 학년 교차 등교 시 - 목, 금요일 16:00 ~ 17:30 (90분)
  - 방학 중 느티나무학교 운영의 경우 별도의 시간 운영 09:00~12:10
- 3) 운영횟수 : 11회(22차시) 실시 예정(1회 2차시 수업)
- 4) 대상 : 본교 재학생 중 희망자

### 3. 개설 프로그램의 결정

- 1) 기초조사를 통한 수요와 1학기 운영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학생의 희망에 따라 개강할 수 있도록 하며, 개강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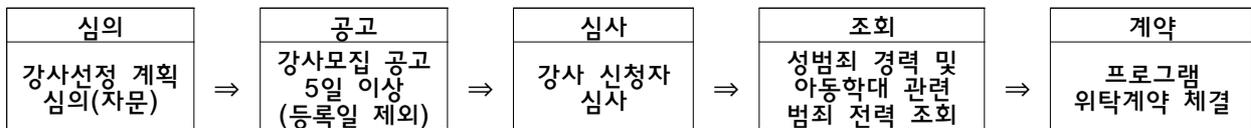
- 2) 수강 학생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15명 전후로 강좌의 특성에 맞춰 개설하고, 수강 신청 학생 인원수가 8명 이하일 때는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교재 및 재료 선정 :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프로그램별로 제출한 교재(교구) 및 재료 선정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에 따라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한다.
- 4) 2023년 2학기 개설 예정 프로그램

### <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

강좌번호	강좌명	강사	대상	모집인원	수업내용	수업시간	수강료
1	농구반	외부강사	전학년	15명 내외	기본기술 및 경기 기능 익히기	금 7,8교시 11회	추후공지 (770,000÷인원수)
2	기타중급반	외부강사	전학년	15명 내외	다양한 노래들에 맞춰 기타 연주해보기(개인 악기 준비)	금 7,8교시 11회	추후공지 (770,000÷인원수)
3	코딩기초반	외부강사	전학년	15명 내외	알고리즘에 중점을 둔 코딩 배우기(재료비 별도)	금 7,8교시 11회	추후공지 (770,000÷인원수) +(재료비)
4	컴퓨터과정반	외부강사	전학년	15명 내외	컴퓨터 활용 작품 만들기(한글)	목 7,8교시 11회	추후공지 (770,000÷인원수)
5	제과제빵반	외부강사	전학년	15명 내외	쿠키, 빵, 케익 만들기 (재료비 별도)	금 7,8교시 11회	추후공지 (770,000÷인원수) +(재료비)
6	가야금연주반	외부강사	전학년	8~12명	기본 연주법 익히기 민요와 대중음악 연주 (학교 가야금 사용)	목 7,8교시 11회	추후공지 (770,000÷인원수)

#### 4.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선정 및 임용

- 1)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방과후학교 활동 담당 강사 및 강사 의뢰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강사 선정 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 2) 강사의 자격
  -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해당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3) 강사 선정 절차



- 4) 위탁기간 : 1년 이내(실제 프로그램 운영기간으로) 계약 체결
- 5) 강사 재계약 :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일 경우 공모 절차 없이 총 2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2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6)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계약은 학교의 장과 강사 간 1:1로 한다.
- 7)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한다.
- 8) 특기적성 강좌의 경우 외부강사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의 선정이 어려울 시 (외부강사 지원이 없거나, 외부강사 심사 결과 평균 60%미만일 경우) 당해 학교 재직교원으로 임용한다.
- 9) 2학기에 1학기과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 시 기존의 학생들 대다수(80%이상일 경우)가 연계하여

수강하길 희망한다면, 해당 학생들의 프로그램 진도 관리를 위해 기존의 강사를 우선 채용한다.

10)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 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li> <li>○ 학교장에 의한 해지</li> <li>〈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li> <li>-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 </ul> </li> <li>〈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li> <li>-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li> <li>-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li> </ul> </li> <li>○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li> </ul> </li> </ul>
--

5.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세부 절차

1) 평가위원

- ▶ 프로그램 운영 서류 심사위원: 창의교육부 부장 및 부원(총 3명)
- ▶ 프로그램 운영 면접 심사위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위원(총 4명)

2) 2학기 외부강사 채용 세부 계획

연번	일정	절차	추진 내용	담당자
1	9.6.(수)	학운위 심의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강사채용계획 포함) 심의	창의교육부장
1	9.7.(목) ~9.12.(화) 16:40까지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 채용 공고 탑재 ▶ 은계중학교 홈페이지 ▶ 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접수 방법 서류접수 및 e-mail(eunkyems@korea.kr)접수 ◦ 제출서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공고 시 서식 첨부)	창의교육부장
2	9.12.(화) 18:00 이후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 서류 심사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가위원 평균이 60점(60%)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 합산점의 고득점 순으로 2배수를 2차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함 ◦ 2차 면접 심사 대상자 개별 통보	창의교육부 부장 및 부원
3	9.13.(수) 15:30	2차 면접 심사	◦ 2차 면접 심사 결과 평가위원의 평가점 평균이 100점 만점 중 60점(60%)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선발하지 않음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면접 심사 점수 합산점의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필요 인원을 선발함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위원(교감, 창의교육부장, 학부모위원 2명)
4	9.13.(수) 17:00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창의교육부장

※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6.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1) 강사와 담당교사가 협의를 통하여 수강생 모집 안내서를 작성한다.
- 2) 수강생 모집 안내서와 신청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홍보한다.
- 3) 수강이 확정된 강좌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홍보한다.
- 4) 수강료 징수 방법 : 스쿨 뱅킹으로 수납

7. 프로그램별 반 편성 및 운영

- 1)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수강 인원은 1개 반 15명 내외로 조직함을 기본으로 하나, 실기 위주의 수업은 강좌 담당 교사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인원수에 맞춰 조직한다.
- 2) 부서별 2개 반 이상 편성 시에는 수준별 또는 학년별 반 편성을 하여 운영한다.
-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4) 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자체 제작 또는 공개된 학습 영상 등)는 당일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8.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계획

- 1) 강사는 연간 지도계획 및 차시별 지도 계획안을 작성하여 담당교사의 사전지도를 받도록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 2) 관리자 및 담당교사는 수시로 교수·학습 현장을 참관하고 지도하며, 강사의 근무태도나 교육 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한다.

9. 강사료

1) 강사료 지급(1차시)

강의 시간(1차시)	강사료(1차시)	비고
45분	35,000원	방과후 수업은 1회 2차시로 운영

2) 강사비 보전

- 방과후학교 개강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과후학교를 취소한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강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 수업료 책정 시 강사비를 신청 학생 인원수로 나눌 때 십 원 단위 아래로 나뉘어 수업료를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십 원 아래 금액은 절사하여 수업료를 정산한다. 절사하여 부족하게 된 강사비는 강사 보전비에서 지급한다.
- 2023 학교 자체 예산 강사 보전비 확보 : 600,000원

3) 강사료 증액 지급: 협의를 거쳐 수강 인원수에 따라 강사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 수강료

- 1)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으로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생 1인 부담액 : 반별로 인원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가)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나)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수습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가정학생)

- 2순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라)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마)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11.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 예방을 위한 교육

- 1) 학교는 국가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수업 또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2) 방과후 수업 담당 교사 및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 12.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제재

##### 1) 방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또는 상습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방과후학교 수업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함.
- 별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

- 상담 및 통보
-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에 3회 연속 불참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상담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림
- 상담 지도 후에도 불참할 경우, 방과후수업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알림
- 제재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방과후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 3) 제재 기준

-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수강시간의 1/2이상일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기간은 학년 구분 없이 다음 학기 1회로 함.

##### 4) 후속 조치

- 제재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담 등의 지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13.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않음

-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로 보는 경우
  - 수강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2)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사. 방과후학교 안전교육

### 1. 교내 안전예방 및 대처 기본수칙

- 1)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며,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등)가 처리함.
- 2) 응급조치 및 피해자의 후송 등은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임장교사 혹은 담임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외상이 없더라도 진단 및 검사를 실시함.
- 3) 사고자가 의식이 없거나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부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 발생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름.
- 4)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보건교사 혹은 사고현장 관리교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며,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들도 기록하게 하고, 아울러 교사의 직무수행과 사후조치 내용도 기록함.
  - 책임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아는 증인을 확보함.
  - 사고처리에 있어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사고담당자 지정)함.
  - 사고처리 관련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또는 보호자)와 직접 협의함.  
(학부모 아닌 제3자 개입 시, 사고처리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음)

### 2. 학생이 지켜야 할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수칙

#### 1) 학교 일상생활 안전수칙

- 복도로 통행할 때에는 교실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바깥 창문 쪽으로 통행
- 비나 눈이 온 뒤에 계단의 물기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특별히 조심
-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가급적 계단 물청소를 하지 않도록 주의
- 난간 사이에 머리를 넣거나 난간을 잡고 서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창문에 매달려 있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도록 지도
- 빠지려고 하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은 즉시 수리하도록 안내

#### 2) 이동시 안전 수칙

-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 녹색불이 켜지기 전에 차도에 내려서지 말아야 하며, 녹색불이 켜진 뒤 바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함.

- 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있지 말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 차도로 내려감.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차도로 내려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됨.

### 3) 기술실 및 가사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실습실에서는 교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항상 정숙하며 장난을 하지 않음.
- 유리, 사기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했을 때 깨지거나 금이 가기 쉬우므로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함.
- 가사 실습에서 음식 재료를 절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재료를 주시한 후 정확히 절단함.
-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함.
- 가스를 켜기 전 후드를 켜서 환기를 시키거나, 후드가 없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킴.
- 가사 실습 시 불의 양을 조절할 때에는 작은 불부터 조금씩 올리도록 함.
- 가사 실습에서 기름이나 물을 끓일 때에는 주변에 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음.
- 뜨거워진 요리 기구를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고 뜨거운 것을 다룰 때는 항상 주의함.
- 수돗물이나 가스 등 각종 재료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며,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함.

## 아. 평가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3.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 자. 기대 효과

1.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3.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안건 번호	3
----------	---

제안년월일 : 2023.9.6.

제 안 자 : 은계중학교장

제안설명자 : 교무기획부장

## 1. 제안이유

- 가. 학생 생활에 관한 학교규칙 재개정 발의 주체로서 학교장과 아울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 구성원을 명시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 규범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나.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칙에 학업 중단 예방 사업 및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자 함.
- 다. 명예졸업에 관한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반영하고자 함.

## 2.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나. 2023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인적·학적 사항 훈령 및 해설

## 3. 주요내용

- 가. 개요
  - 1) 학교규칙 재·개정 절차
  - 2) 학업중단 예방 운영
  - 3) 명예졸업 반영
- 나. 내용 : 붙임 참조

- 붙임 1. 2023학년도 학교규칙 신규 대조표 1부.  
2.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1부. 끝.

2023학년도 학교규칙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학업중단 예방</b></p> <p><b>제25조 【학업중단숙려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li> <li>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li> <li>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b></p> <p><b>제25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li> <li>2. ---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li> </ol> <p><b>제26조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li> <li>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b></p> <p><b>제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li> <li>2. --- 조기졸업, 명예졸업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li> </ol> <p><b>제27조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 인정을 위하여 ---</li> <li>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에 관하여 ---</li> <li>3.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그 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유도 명예졸업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 제10장 ---</b></p> <p><b>제27조 ~ 제33조 ---</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9장 ~ 제11장 ---</b></p> <p><b>제28조 ~ 제34조 ---</b></p>

## 제11장 보칙

### 제34조 【학칙개정절차】

1.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2.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장 학칙 개정

### 제35조 【학칙개정절차】

1.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 과반수
  2. 재직 교원 2분의 1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3.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6조 (시행규칙)

1.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학교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은계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은계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을 바로 세우고 지키며 행동하는 사람을 기른다. (도덕인)
2. 더불어 사는 사회의 협동·봉사하는 사람을 기른다. (협동인)
3. 소질을 계발하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을 기른다. (창의인)
4. 아름다운 조화로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기른다. (심미인)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은계중학교(銀桂中學校)라 한다.

**제5조 【설립인가 및 위치】** 본교는 2008년 3월 1일 10학급으로 설립인가 되었으며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111번길 10(대야 동)에 둔다.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 【휴업일】

- 1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여름방학
  - ③ 겨울방학              ④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무일
  - ⑤ 학교장재량휴업일
2. 제1항 제⑤호(학교장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제②호, 제③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의2 【특수교육】**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계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판단될 경우 불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이외의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허가일수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

6.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학생평가】**

1.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른다.
3.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 【수료 및 졸업】**

1.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유예·면제**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제17조 【입학시기】**

1.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방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9조 【재취학】** 본교를 유예·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한다. 단, 재취학 학년도 학교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진급·졸업을 할 수 없다.

#### **제20조 【전·편입학】**

1. 본교에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73조 및 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전학, 편입학 포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21조 【유예 및 면제】**

1.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에 의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22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장 학업중단 예방**

#### **제25조 【학업중단숙려제】**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

### 제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

1.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 명예졸업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27조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그 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유도 명예졸업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 제9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 제28조 【기타 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29조 【학교생활규정】

1.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2.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0조 【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징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제1항 제④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른다.

##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3조 【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계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2.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4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2장 학칙 개정

### 제35조 【학칙개정의 절차】

1.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3.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6조 (시행규칙)

1.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